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국회의 통제 기능 강화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11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국회의 통제 기능 강화(안 제12조의2제9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국회의 통제 기능 강화 (안 제12조의2제9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재조정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2조의2¹⁾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되, “정부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2. (생략)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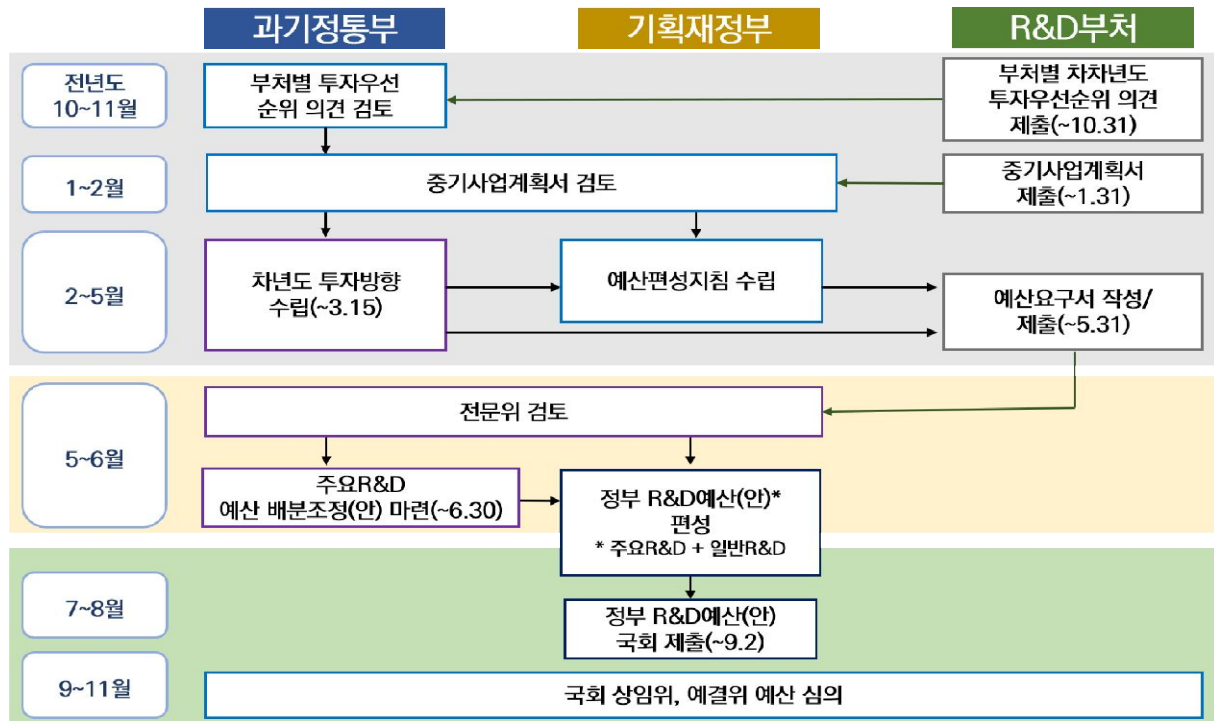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8항).

【 R&D 예산 배분·조정 절차 】



그런데 예외 사유인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가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다시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²⁾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정회를 개최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조사처,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의 쟁점과 입법방향, 2021.11.13.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배분·조정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³⁾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부분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사실상의 예산안 편성 권한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⁴⁾에서는 예산안 편성 권한은 정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국회에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부분은 상위 규범인 헌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부분 외에는 사후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정부 예산안 편성 권한에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3) 정부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69, 2010. 11. 30.

4)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부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의 최종적인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인 「국가재정법」⁵⁾인 것이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법률로써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으로 헌법체계를 고려 시 R&D 예산 배분·조정 의 변경사항에 관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편성 권한이 있고, 정부 예산안 편성 완료 직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므로 별도의 동의나 보고절차는 실효성이 낮으며, 개정안의 의무 부여 대상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재정당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9

5)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